
보건소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 서 명	보건행정과
기 정 액	14,767,079천원	요 구 액	467,107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장·관·항·목 ◎부기명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세입내용·산출내역·증감사유
		최종예산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세외수입	32,878	29,262	5,500	0	0	23,762	-3,616	
경상적세외수입	17,051	14,729	500	0	0	14,229	-2,325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사업예탁금정산이자	17,051	14,729	500	0	0	14,229	-2,325	· 세입내용 : 예탁사업 등 6개 사업 정산 이자 · 산출내역 : 14,229천원*1회 · 증감사유 : 예탁금 정산 이자 감소
임시적세외수입	15,325	14,489	5,000	0	0	9,489	-836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김포페이 미사용소멸액 정산 반납	0	3,748	0	0	0	3,748	3,748	· 세입내용 : 21~22년 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사업 김포페이 미사용 소멸액 정산 반납 · 산출내역 : 3,748천원*1회 · 증감사유 : 김포페이 미사용 소멸액 정산금 발생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영유아건강검진 예탁금 정산반납	0	156	0	0	0	156	156	· 세입내용 : 2025년 영유아건강검진 사업 예탁금 정산 반납 · 산출내역 : 156천원*1회 · 증감사유 :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한 증가
기타수입/그외수입 ◎보건지소 관사 보증금 반납 등	15,325	10,585	5,000	0	0	5,585	-4,740	· 세입내용 : 관사 보증금 납입 · 산출내역 : 5,000,000원*2회 · 세입내용 :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환급금 납부 · 산출내역 : 132,000원*1회 · 세입내용 : 상동리보건진료소 착오입금액 · 산출내역 : 2,200원*1회 · 세입내용 : 냉난방기 교체공사건 철거고재 매입 · 산출내역 : 351,000원*1회 · 세입내용 : 투표소 사용 사례금 · 산출내역 : 100,000원*1회 · 증감사유 : 보증금반납액 및 고재 매입 발생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02	44	0	0	0	44	-458	
환수금/부정이익환수금 ◎국가건강검진비용 부당청구 환수	502	44	0	0	0	44	-458	· 세입내용 : 2025년 국가건강검진비용 부당청구 환수 · 산출내역 : 44천원*1회 · 증감사유 : 환수금액 감소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2,728	71,440	0	0	0	71,440	-1,288	
보전수입등	72,728	71,440	0	0	0	71,440	-1,288	
보조금등반환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정산금 반납	61,810	51,308	0	0	0	51,308	-10,502	· 세입내용 : 예탁사업 등 7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 산출내역 : 51,308천원*1회 · 증감사유 : 집행잔액 감소
보조금등반환금 /사도비보조금등반환금 ◎정산금 반납	10,918	11,385	0	0	0	11,385	9,214	· 세입내용 : 예탁사업 등 7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 산출내역 : 11,385천원*1회
		8,747	0	0	0	8,747		· 세입내용 : 21~22년 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사업 김포페이 미사용 소멸액 정산 반납 · 산출내역 : 8,747천원*1회 · 증감사유 : 김포페이 미사용 소멸액 정산금 발생

보건진료소 의료 및 보건사업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양촌읍 첫섬로 11외
사업규모	보건진료소 7개소(학운리, 대벽리, 송마리, 성동리, 개곡리, 마조리, 석탄리)		
사업목적	보건진료소의 효율적 운영 및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취약지역 주민건강증진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15조제1항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① 시장[도농복합형태(都農複合形態)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구의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는 해당 시장·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군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시 또는 구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191,830	214,606	214,606	0	0	0	22,776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91,830	214,606	214,606	0	0	0	22,776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0	
보건진료소 의료 및 보건사업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청사 관리 용역비 :경정(1,394,000*10회) - 기정(2,394,000*10회)	= -10,000	
	307-01 의료및회복비	· 일차진료 의약품 등 구입 :경정(9,499,400원*10종) - 기정(8,499,400원*10종)	= 10,000	

□ 예산요구 사유

- 필수 의약품 단가 인상으로 기존 예산에서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기 어려움
-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을 의료 및 회복비로 통계목 변경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

□ 예산증감 사유

- 예산 증감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2026.12. : 보건진료소 진료 및 보건사업 운영
 - 2026.02. ~ 2026.04. : 김포시 의약품 등 심의위원회 개최, 진료의약품 및 진료소모품 계약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보건진료소 진료실적 : 10,317건 · 의료및회복비(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 79,687천원(집행률 90%)
2025	· 보건진료소 진료실적 : 9,662건 · 의료및회복비(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 87,132천원(집행률 93%)
2026	· 보건진료소 진료실적 : 5,161건 · 의료및회복비(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 76,932천원(집행률 60%)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87,010	181,840	-	5,170	
2025	191,830	181,934	-	9,896	
2026	214,606	144,606	-	70,000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김지영	담당자	보건진료7급 김나현	전화	4242
-----	-------	------------	-----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전환)(성립전)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파견 지원으로 산모 회복과 아기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제1항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2,081,378	2,622,777	2,027,220	0	0	595,557	541,399	
국비		0					0	
도비	1,456,965	1,835,945	1,419,055	0	0	416,890	378,980	
시비	624,413	786,832	608,165	0	0	178,667	162,419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95,55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전환)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경정(2,622,777,000원)-기정(2,027,220,000원)	= 595,557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8935(2026. 5. 15.)호 관련, 변경내시 및 자금교부(9차)에 따라 도비(416,890천원) 성립전 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예산 부족분 546,761천원을 2026년 예탁금에서 상계함에 따라 2026년 사업비 부족 예상
- 2026년 5월 말 기준 예탁금 집행실적 및 월평균 집행액을 반영하여 사업비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2026.12.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2026.06. : 보조금 교부 및 성립전예산 편성
 - 2027.01. : 사업 집행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1,315명
2025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1,566명
2026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1,044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721,429	1,721,429	-	-	
2025	2,081,978	2,081,978	-	-	
2026	2,444,110	2,444,110	-	-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장 최보라	담당자	보건7급 이인정	전화	4152
-----	-------	------------	-----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성립전)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파견 지원으로 산모 회복과 아기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제1항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280,000	318,517	271,450	0	0	47,067	38,517	
국비		0					0	
도비	140,000	95,555	81,435	0	0	14,120	-44,445	
시비	140,000	222,962	190,015	0	0	32,947	82,962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7,06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추가형)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경정(318,517,000원)-기정(271,450,000원)	= 47,067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8935(2026. 5. 15.)호 관련, 변경내시 및 자금교부(9차)에 따라 도비(14,120천원) 성립전 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5월 말 기준 예탁금 집행실적 및 월평균 집행액을 반영한 결과 연간 사업비 부족 예상
-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위해 사업비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2026.12.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2026.06. : 보조금 교부 및 성립전예산 편성
 - 2027.01. : 사업 집행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278명
2025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285명
2026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158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262,000	262,000	-	-	
2025	280,000	280,000	-	-	
2026	285,570	285,570	-	-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장 최보라	담당자	보건7급 이인정	전화	4152
-----	-------	------------	-----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1,890명		
사업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 및 건강증진 도모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
		제10조(지원내용)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본인부담금: 제9조에 따른 대상자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한다.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1,017,900	973,432	771,900	0	0	201,532	-44,468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017,900	973,432	771,900	0	0	201,532	-44,468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1,53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경정(973,432,000원)-기정(771,900,000원)	= 201,532	

□ 예산요구 사유

- 2026년 1월~7월 월별 평균 지원금액은 80,165천원으로 10월부터 예산 부족 예상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대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월별 평균 신청자 증가
 - 월평균 신청자 : 2025년 135명 → 2026년 145명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단가 상승
 - 2026년 최저임금 및 전년도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책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단가 비교

- 2025년 지원단가

1일당 단가 (천원)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사태아 이상	
		1명	2명	2명	3명	2명	4명
	142.4	178	275.2	356.8	412.8	384	550.4

- 2026년 지원단가

1일당 단가 (천원)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사태아 이상	
		1명	2명	2명	3명	2명	4명
	146.4	183.2	284.8	369.6	427.2	398.4	569.6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2026.01. ~ 2026.12.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2026.12. : 사업 결과 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25년 신규사업)
2025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1,884명
2026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1,011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1,017,900	971,872	-	46,028	
2026	771,900	561,151	-	210,749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장 최보라	담당자	보건7급 이인정	전화	4152
-----	-------	------------	-----	----------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165명		
사업목적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모자보건법		제3조제1항·제2항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80,000	130,000	100,000	0	0	30,000	50,000	
국비	40,000	65,000	50,000	0	0	15,000	25,000	
도비	20,000	32,500	25,000	0	0	7,500	12,500	
시비	20,000	32,500	25,000	0	0	7,500	12,5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307-01 의료및회복비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 지원 : 경정(130,000,000원)-기정(100,000,000원)	= 30,00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13103(2026. 7. 31.)호 관련,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 반영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한도 상향에 따른 사업비 소요 증가

○ 2026년 7월 기준 지원실적(115명, 84,721천원)이 2025년 연간 실적(103명, 79,894천원)을 초과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사업계획 수립
 - 2026.01. ~ 2026.12.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2026.12. : 사업집행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미숙아 및 선천청 이상아 의료비 지원 : 162명
2025	· 미숙아 및 선천청 이상아 의료비 지원 : 103명
2026	· 미숙아 및 선천청 이상아 의료비 지원 : 115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00,000	93,238	-	6,762	
2025	80,000	79,894	-	106	
2026	100,000	84,721	-	15,279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장 최보라	담당자	의료기술8급 김은정	전화	4155
-----	-------	------------	-----	------------	----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기간		2026.1.1.~2026.12.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119건		
사업목적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의 조기 발견·치료로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모자보건법		제3조제1항·제2항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74,000	100,000	60,000	0	0	40,000	26,000	
국비	37,000	50,000	30,000	0	0	20,000	13,000	
도비	18,500	25,000	15,000	0	0	10,000	6,500	
시비	18,500	25,000	15,000	0	0	10,000	6,5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0,000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307-01 의료및회복비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경정(100,000,000원)-기정(60,000,000원)	= 40,00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7062(2026. 4. 8.)호 관련,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 반영

□ 예산증감 사유

- 등록환아의 의료비 및 특수식이 지속 지원을 위한 연간 사업비 부족 예상
- 2026년 7월 말 기준 예산 60,000천원 중 52,782천원 집행(집행률 88.0%)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사업계획 수립
- 2026.01. ~ 2026.12.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의료비 및 특수식이 지원
- 2026.12. : 사업집행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선천성대사이상 의료비 지원 : 15건 · 선천성대사이상 특수식이 지원 : 54건
2025	· 선천성대사이상 의료비 지원 : 10건 · 선천성대사이상 특수식이 지원 : 64건
2026	· 선천성대사이상 의료비 지원 : 6건 · 선천성대사이상 특수식이 지원 : 47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65,000	64,040	-	960	
2025	74,000	73,570	-	430	
2026	60,000	52,782	-	7,218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장 최보라	담당자	의료기술8급 김은정	전화	4155
-----	-------	------------	-----	------------	----	------

암환자 지원(암환자 의료비 지원)(성립전)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소아 암환자			
사업목적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치료 접근성 향상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암관리법			제13조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118,722	203,478	80,000	0	0	123,478	123,478	
국비		0					0	
도비	68,264	117,000	46,000	0	0	71,000	48,736	
시비	50,458	86,478	34,000	0	0	52,478	36,02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23,478	
암환자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307-01 의료 및 회복비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경정(203,478,000원) - 기정(80,000,000원)	= 123,478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8694(2026. 5. 29.)호 관련,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 반영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2026년 예산부족으로 발생한 미지급액 누적으로 증액
- 2026.7.31. 기준 미지급액 : 131,195천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2026.12. : 암환자 의료비 신청 접수 및 등록, 의료비 지급
- 2026.01. ~ 2026.12. : 소아 암환자 소득·재산 조사 실시 및 결정 통보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암환자의료비 지원 : 138명 180,106천원 (건강보험 30명 15,372천원, 의료급여수급자 96명 100,562천원, 소아암 32명 93,122천원)
2025	· 암환자의료비 지원 : 81명 118,720천원 (건강보험 15명 10,445천원, 의료급여수급자 56명 70,151천원, 소아암 10명 38,124천원)
2026	· 암환자의료비 지원 : 70명 148,726천원 (의료급여수급자 58명 82,881천원, 소아암 12명 65,845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80,106	180,106	-	-	
2025	118,722	118,722	-	-	
2026	151,000	148,726	-	2,274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진료검진팀장 김춘숙	담당자	보건9급 권정희	전화	4103
-----	-------	------------	-----	----------	----	------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본인부담약제비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약제비 지원 대상자 1,700명		
사업목적	고혈압, 당뇨병 본인부담약제비 지원으로 지속적 치료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제1항, 제4항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보건소 수가 조례	제10조제2항제7호, 제3항
		제10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②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를 면제받는 65세 이상 만성질환자인 고혈압, 당뇨병환자의 본인 부담금 약제비는 조례 투약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51,000	61,200	51,000	0	0	10,200	10,2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1,000	61,200	51,000	0	0	10,200	10,2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200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본인부담약제비 지원	307-01 의료 및 회복비	·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본인부담약제비 지원 : 경정(3,000원*1,700명*12월)-기정(3,000원*1,417명*12월)	= 10,200	

□ 예산요구 사유

- 만성질환 내소 환자 및 고혈압·당뇨 약제비 지원 대상자 증가 추세
- 2026년 7월 기준 76% 집행 및 하반기 수요 지속 증가에 따른 추가 예산 편성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대비 고혈압·당뇨 약제비 월평균 지원 건수 14% 증가
 - 월평균 지원 건수 : 2025년 361건 → 2026년 413건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정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본인부담약제비 지원사업 계획 수립
 - 2026. 1. ~2026. 12. :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본인부담약제비 지원사업 추진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본인부담약제비 지원 : 1,518명 / 5,113건
2025	·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본인부담약제비 지원 : 1,453명 / 4,082건
2026	·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본인부담약제비 지원 : 1,476명 / 3,133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57,600	57,597	-	3	
2025	51,000	50,992	-	8	
2026	51,000	38,714	-	12,286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진료검진팀장 김춘숙	담당자	간호8급 김영지	전화	4105
-----	-------	------------	-----	----------	----	------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 서 명	감염병관리과
기 정 액	8,156,651천원	요 구 액	-162,306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장·관·항·목 ◎부기명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세입내용·산출내역·증감사유
		최종예산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세외수입	7,279	5,292	6,130	0	0	-838	-1,987	
임시적세외수입	7,279	5,292	6,130	0	0	-838	-1,987	
재판매각수입/불용 품매각대금 ◎방역용 화물차량 매각대금	0	2,000	6,000	0	0	-4,000	2,000	· 세입내용 : 방역용 화물차량 폐차 매각대금 · 산출내역 : 2,000,000원 -기정 6,000,000원 · 증감사유 : 폐차 실적(2,000,000원)에 따른 감액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인플루엔자 백신 반품정산비	7,149	2,785	0	0	0	2,785	-4,364	· 세입내용 : 25-26절기 인플루엔자백신 반품금 · 산출내역 : 2,785,620원 -기정 0원 · 증감사유 : 백신반품에따른 정산비 자체보조금분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국가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환수금	0	384	0	0	0	384	384	· 세입내용 : 국가예방접종실시 위탁의료기관 환수금 · 산출내역 : 384,700원 -기정 0원 · 증감사유 : 위탁의료기관 환수액 자체보조금분
기타수입/그외수입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환급금	130	123	130	0	0	-7	-7	· 세입내용 : 유류공동구매카드 적립포인트 환급금 · 산출내역 : 123,160원 -기정 130,000원 · 증감사유 : 5.30. 123,160원 세입처리완료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720	5,885	0	0	0	5,885	3,165	
보전수입등	2,720	5,885	0	0	0	5,885	3,165	
보조금등반환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인플루엔자 백신 반품정산비	2,090	3,979	0	0	0	3,979	1,889	· 세입내용 : 25-26절기 인플루엔자백신 반품금 · 산출내역 : 3,979,460원 -기정 0원 · 증감사유 : 백신반품에따른 정산비 국고보조금분
보조금등반환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국가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환수금	0	549	0	0	0	549	549	· 세입내용 : 국가예방접종실시 위탁의료기관 환수금 · 산출내역 : 549,600원 -기정 0원 · 증감사유 : 위탁의료기관 환수액 국고보조금분
보조금등반환금/ 사도비보조금등반환금 ◎인플루엔자 백신 반품정산비	630	1,193	0	0	0	1,193	563	· 세입내용 : 25-26절기 인플루엔자백신 반품금 · 산출내역 : 1,193,840원 -기정 0원 · 증감사유 : 백신반품에따른 정산비 사·도비보조금분
보조금등반환금/ 사도비보조금등반환금 ◎국가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환수금	0	164	0	0	0	164	164	· 세입내용 : 국가예방접종실시 위탁의료기관 환수금 · 산출내역 : 164,860원 -기정 0원 · 증감사유 : 위탁의료기관 환수액 국고보조금분

취약지역 방역소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 전지역		
사업목적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강화하여 말라리아 등 감염병으로부터 시민 건강보호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51조(소독 의무) 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397,023	462,142	504,161	0	0	-42,019	65,119	
국비								
도비								
시비	397,023	462,142	504,161			-42,019	65,119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2,019	
취약지역 방역소독	307-05 민간위탁금	· 민간위탁 방역소독 : 경정(31,785,700원*10권역)-가정(35,987,600원*10권역) =	-42,019	

□ 예산증감 사유

- 업체별 제한 최저가 견적 제출 입찰 집행으로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감액
 ※ 민간위탁 입찰 낙찰하한율 : 88%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승인	-	-	동의	-	반영
일자	2025.11.	-	-	-	-	2025.10	-	-	2025.10	-	2025.9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방역소독 사업 계획 수립
 - 2026. 03. : 취약지역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채용
 - 2026. 04. ~ 11. : 민간위탁 방역소독 용역 계약 및 사업 수행
 - 2026. 11. ~ 12. : 민간위탁 방역소독 사업 정산 및 취약지역 방역소독 사업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해빙기방역 실시 : 129회 - 모기서식지 조사 및 유충, 성충구제 : 2,982회 - 민간위탁 방역소독 16개 권역 하절기 집중 방역 실시 : 1,371건 - 살충제, 유충구제제 등 2,861ℓ 사용 - 해충퇴치기 300대, 해충기피제함 15대 관리, DMS 12대 관리
2025	- 해빙기 방역 실시 : 유충구제 86회, 연막소독 47회 - 모기서식지 조사 및 유충, 성충구제 : 2,030회 - 민간위탁 방역소독 10개 권역 하절기 집중 방역 실시 : 744건 - 살충제, 유충구제제 등 2,090ℓ 사용 - 해충퇴치기 308대, 해충기피제함 19대 관리, DMS 12대 관리
2026	- 해빙기 방역 실시 : 유충구제 221회, 연막소독 27회 - 모기서식지 조사 및 유충, 성충구제 : 3,330회 - 민간위탁 방역소독 10개 권역 하절기 집중 방역 실시 : 753건 - 살충제, 유충구제제 등 3,059ℓ 사용 - 해충퇴치기 310대, 해충기피제함 19대 관리, DMS 12대 관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568,848	520,632	-	48,216	
2025	397,023	376,278	-	20,745	
2026	504,161	303,897	-	200,264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대응팀장 이청희	담당자	간호8급 김재민	전화	4119
-----	--------	-------------	-----	----------	----	------

지자체 결핵진단검사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108
사업규모	김포시민		
사업목적	결핵 발병 예방과 조기 발견 등 결핵 관리를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결핵예방법	제27조 제1항,제2항
		제27조(시·도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제1항,제2항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도가 부담한다. 1.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지부의 결핵관리에 드는 경비 2. 제 10조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에 드는 경비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관리 등에 드는 경비 ② 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제26조에 따라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3,848	4,250	1,716	0	0	2,534	402	
국비	1,924	2,125	858			1,267	201	
도비	577	637	257			380	60	
시비	1,347	1,488	601			887	141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534	
지자체 결핵진단검사 지원	307-01 의료 및 회복비	· 결핵 진단검사 지원 및 재료비 구입 경정(16,340원*260건)-기정(16,340원*105건)	= 2,534	

□ 예산요구 사유

- 결핵의심자 진단검사(흉부X선검사, 객담검사3종, 약제감수성검사) 지원
- 결핵 진단검사 재료비 구입(시약 및 소모품비)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감염병관리과-4302(2026.2.12.)호 관련, 확정내시 변경
- '26년 사업량 산출치 증가(105건 → 260건)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결핵진단검사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6. 02. : 결핵진단검사 시약 등 재료 구입
 - 2026. 01. ~ 12.: 결핵진단검사 실시 등 사업 운영
 - 2026. 12. : 사업 평가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결핵진단검사 : 123건
2025	· 결핵진단검사 : 137건
2026	· 결핵진단검사 : 74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5,774	4,625	-	1,149	
2025	3,848	3,848	-	-	
2026	1,716	1,603	-	113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장 손정원	담당자	간호8급 이미나	전화	4055
-----	--------	-------------	-----	----------	----	------

예방접종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민		
사업목적	집단면역을 형성하여 감염병의 전파 차단 및 질병의 발생률 감소로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177,270	186,946	172,818			14,128	9,676	
국비								
도비								
시비	177,270	186,946	172,818			14,128	9,676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4,128	
예방접종사업	307-01 의료및회복비	·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44,150원 * 320명 =	14,128	

□ 예산요구 사유

- 김포시 거주 임신 27주 이상, 분만 60일 이내의 임산부 및 배우자, (외)조부모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신규 추진
-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통한 가족 내 감염원 차단으로 영아의 중증감염을 예방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예산증감 사유

-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와 배우자, (외)조부모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신규 추진에 따른 백신비(24,540원) 및 위탁의료기관 시행비(19,610원) 편성
-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방법 : 위탁의료기관에서 대상자 접종 후 보건소로 비용상환 신청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9. :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 개정
- 2026. 10. : 위탁의료기관 계약 체결 및 대상자 접수
- 2026. 11.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업로드 및 접종 시작
- 2026. 12. : 위탁의료기관 백신비 및 접종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B형간염(성인 고위험군) 백신 구입 : 550도즈 · 지자체사업용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 1,430명
2025	· B형간염(성인 고위험군) 백신 구입 : 700도즈 · 대상포진(65세 이상 취약계층) 백신 구입 : 1,057도즈 · 지자체사업용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 1,500명
2026	· B형간염(성인 고위험군) 백신 구입 : 690도즈 · 대상포진(65세 이상 취약계층) 백신 구입 : 1,000도즈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62,650	56,877	-	5,773	
2025	177,270	163,259	-	14,011	
2026	172,818	109,049	-	63,769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장 손정원	담당자	간호7급 김희환 의료기술9급 최경은	전화	4156 4158
-----	--------	-------------	-----	------------------------	----	--------------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민		
사업목적	예방접종 실시로 감염병 사전 예방 및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2항, 제28조 제1항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및 질병관리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8,466,612	8,467,136	8,715,110	12,026	0	-260,000	524	
국비	4,233,306	4,233,568	4,357,555	6,013		-130,000	262	
도비	1,269,775	1,270,072	1,307,268	1,804		-39,000	297	
시비	2,963,531	2,963,496	3,050,287	4,209		-91,000	-35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60,000	
국가예방접종 실시	307-01 의료및회복비	· 어린이 예방접종 경정5,073,602,000원 - 기정5,333,602,000원	= -260,000	

□ 예산요구 사유

- BCG 등 어린이 19종 예방접종의 접종비용(백신비 및 시행비) 전액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감염병관리과-14366(2026. 6. 30.)호 관련,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 '25년 예방접종비 미지급 시·군 발생에 따른 경기도 지자체 간 예산조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국가예방접종사업지침 시달 및 예방접종사업 계획 수립
- 2026. 01. ~ 12. : 매월 2회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상환 심사 및 비용 지급
- 2026. 03. ~ 06. : 위탁의료기관 연 2회 자율점검 및 방문점검 실시
- 2026. 09. ~ 12. : '26-'27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계약 및 백신 배정
예방접종 홍보, 접종비용 상환 심사 및 비용 지급
- 2026. 12. : 사업 집행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실적: 122,866건 ·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국가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실적: 4,308건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및 검사비 지원 실적: 109건 · 인플루엔자(어린이,임신부,어르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실적: 106,792건 ·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실적: 5,864건
2025	·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실적: 110,120건 ·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국가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실적: 4,626건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및 검사비 지원 실적: 111건 · 인플루엔자(어린이,임신부,어르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실적: 73,249건 ·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실적: 6,485건
2026	·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실적: 44,016건 ·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국가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실적: 2,947건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및 검사비 지원 실적: 58건 · 인플루엔자(어린이,임신부,어르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실적: 2,023건 ·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실적: 3,409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8,542,236	8,542,207	-	29	
2025	8,466,612	8,466,605	-	7	
2026	8,727,136	2,924,546	-	5,802,590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장 손정원	담당자	간호7급 김희환 의료기술9급 최경은	전화	4156 4158
-----	--------	-------------	-----	------------------------	----	--------------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보건사업과



(보건사업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 서 명	보건사업과
기 정 액	2,319,827천원	요 구 액	6,423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장·관·항·목 ◎부기명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세입내용·산출내역·증감사유
		최종예산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세외수입	40,322	1,545	1,000	0	0	545	-38,777	
경상적세외수입	1,532	1,232	1,000	0	0	232	-300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위탁, 예탁)	30	0	1,000	0	0	-1,000	-30	○세입내용 : 세부사항 입력에 따른 감액 ○산출내역 : -1,000,000원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2025년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 조사 전문가실무 교육과정 시비이자 반납	0	0	0	0	0	0	0	○세입내용 : 2025년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전문가 실무교육과정 시비이자 반납 ○산출내역 : 510원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시비 이자 반납	967	811	0	0	0	811	-156	○세입내용 :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시비 이자 반납 ○산출내역 : 811,590원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2025년 지역보건 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 위탁환급금 시비이자 반납	0	0	0	0	0	0	0	○세입내용 : 2025년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발굴 역량강화교육 예탁환급금 시비이자 반납 ○산출내역 : 350원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202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시비이자	469	354	0	0	0	354	-115	○세입내용 :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시비이자 반납 ○산출내역 : 354,040원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2026년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1분기 이자수입 반납	66	67	0	0	0	67	1	○세입내용 : 2026년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1분기 이자수입 반납 ○산출내역 : 67,780원
임시적세외수입	38,790	313	0	0	0	313	-38,477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025년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전문가 실무교육과정 시비 집행잔액 반납	0	0	0	0	0	0	0	○세입내용 : 2025년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전문가 실무교육과정 시비 집행잔액 반납 ○산출내역 : 100원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025년 지역보건 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 시비잔액 반납	0	0	0	0	0	0	0	○세입내용 : 2025년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발굴 역량강화 교육 예탁환급금 시비 집행잔액 반납 ○산출내역 : 560원

장·관·항·목 ◎부기명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세입내용·산출내역·증감사유
			최종예산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보조금반환수입 /위탁비반환수입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시비 집행잔액 반납	38,766	293	0	0	0	293	-38,473	○세입내용 :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시비 집행잔액 반납 ○산출내역 : 293,550원
	기타수입 /그외수입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환급금 반납	24	20	0	0	0	20	-4	○세입내용 :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환급금 반납 ○산출내역 : 20,09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3,182	3,580	0	0	0	3,580	-89,602	
	보전수입등	93,182	3,580	0	0	0	3,580	-89,602	
	보조금등반환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전문가 실무교육과정 예약환급금 국비분 납부	0	0	0	0	0	0	0	○세입내용 : 2025년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전문가 실무교육과정 예약환급금 국비분 납부 ○산출내역 : 610원
	보조금등반환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사업 집행잔액 국비반환금 납부	92,713	3,032	0	0	0	3,032	-89,681	○세입내용 :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사업 집행잔액 국비반환금 납부 ○산출내역 : 3,032,890원
	보조금등반환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 예약환급금 국비 납부	0	0	0	0	0	0	0	○세입내용 : 2025년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발굴 역량강화 교육 예약환급금 국비 납부 ○산출내역 : 910원
	보조금등반환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지역사회건강 조사사업 이자발생액(국비)	469	354	0	0	0	354	-115	○세입내용 : 202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이자발생액(국비) 납부 ○산출내역 : 354,040원
	보조금등반환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사업 도비환급금 납부	0	194	0	0	0	194	194	○세입내용 : 2025년 전국민마음투자사업 도비환급금 납부 ○산출내역 : 194,670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39명		
사업목적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22,800	18,018	18,720	0	0	-702	-4,782	
국비		0					0	
도비	22,800	18,018	18,720			-702	-4,782	
시비		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702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경정(50,000원*39명*약 9.24개월) - 기정(50,000원*39명*약 9.6개월) =	-702	

□ 예산요구 사유

- 2026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 변경 예산 통보(경기도 정신 건강과-1497호)에 따른 도비 금액 반영
-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복리후생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변경 예산 통보에 따라 702천원 감액
- 부족분은 경기도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증액을 추진 중이며, 추가 통보 시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 예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12. :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 38명
2025	-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 39명
2026	-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 37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22,800	21,000	-	1,800	
2025	23,400	20,200	-	3,200	
2026	18,720	12,400	-	6,320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정신건강팀장 신수정	담당자	간호8급 김현우	전화	4124
-----	-------	------------	-----	----------	----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국비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연중)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76명(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목적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를 통한 증상 완화 및 사회복귀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64조제9항, 제80조제1항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4조(외래치료 지원 등)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80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4조 및 제50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32,960	43,282	32,960	4,322	0	6,000	10,322	
국비	16,480	21,641	16,480	2,161		3,000	5,161	
도비		0					0	
시비	16,480	21,641	16,480	2,161		3,000	5,161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000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국비사업)	307-05 민간위탁금	· 행정입원비 지원 : 경정(1,000,000원*31명) - 기정(1,000,000원*25명) =	6,000	

□ 예산요구 사유

- 2026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국비사업) 변경 예산 통보(경기도 정신건강과-10926호)
- 입원 및 외래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정신질환 응급입원비 지원, 행정입원비 지원, 외래치료 지원(소득 기준 제한 없음)
 - 발병 초기 치료지원비(지원조건 :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5월 기준 당해 예산액을 초과하여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비가 접수되었으며, 경기도 내 시군간 조정을 통해 정신질환자 치료비(국비) 600만원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계획 수립
 - 2026. 1. ~ 12. : 정신질환자 치료비(국비) 지원 사업 추진
 - 2026. 12. : 결과 보고 및 사업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자 수 : 33명(실인원) / 54명(연인원)
2025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자 수 : 67명(실인원) / 76명(연인원)
2026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자 수 : 28명(실인원) / 33명(연인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32,960	32,960	-	-	
2025	32,960	32,960	-	-	
2026	37,282	27,697	-	9,585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정신건강팀장 신수정	담당자	의료기술7급 김혜인	전화	4122
-----	-------	------------	-----	------------	----	------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북부보건센터



진료검진사업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 77
사업규모	김포시민(북부권)		
사업목적	진료 및 검진 내소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해당조례	김포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
		소속부서의 장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67,353	168,085	73,675			94,410	100,732	
국비								
도비								
시비	67,353	168,085	73,675			94,410	100,732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94,410	
진료검진사업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북부보건센터 진료의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기본급: 1,000,000원*1명*63일 - 유급휴일수당: 1,000,000원*1명*16일 - 4대보험료: 79,000,000원*14% =	90,060	
	307-01 의료 및 회복비	. 방사선실 X-ray 판독비 - 경정(1,300원*5,146건)-기정(1,300원*1,800건) =	4,350	

□ 예산요구 사유

- 관리의사 공백 및 자체 X-ray 판독 불가로, 외부 전문기관 위탁 판독을 위한 추가 비용 발생

□ 예산증감 사유

- 임기제 공무원(관리의사)확보 불가 시, 대체 의료 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발생
- 하반기 예상 X-ray 판독 의뢰 건수 증가(1,800건 → 5,146건)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12. : 일반진료 및 한의진료, 제증명(건강진단결과서, 건강진단서)발급 등
- 2026. 08. : 임기제공무원 의사 채용 의뢰
- 2026. 09. : 임기제공무원 의사 채용 미충원 시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2026. 10. ~ 12. :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대체 진료체계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진료(일반, 한의): 8,053건 · 제증명 발급: 9,422건 · 임상병리 검사: 25,817건 · 예방접종 및 임신부 등록: 535건 · 물리치료: 4,242건 · X-ray 검사: 9,208건, 골밀도검사: 180건
2025	· 진료(일반, 한의): 7,540건 · 제증명 발급: 12,631건 · 임상병리 검사: 31,440건 · 예방접종 및 임신부 등록: 801건 · 물리치료: 4,417건 · X-ray 검사: 12,216건, 골밀도검사: 250건
2026	· 진료(일반, 한의): 3,577건 · 제증명 발급: 11,855건 · 임상병리 검사: 19,427건 · 예방접종 및 임신부 등록: 472건 · 물리치료: 2,238건 · X-ray 검사: 7,792건, 골밀도검사: 133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84,906	73,726	-	11,180	
2025	67,353	64,978	-	2,375	
2026	93,175	23,692	-	69,483	7.31기준 집행현황 (예비비 19,500 포함)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북부보건센터	보건관리팀장 고종중 진료검진팀장 주일국	담당자	간호조무7급 김태훈 의료기술7급 김재영	전화	4192 4222
-----	--------	--------------------------	-----	--------------------------	----	--------------

북부권 치매통합관리 체계 강화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 77	
사업규모		북부권 5개 읍, 면 60세 이상 주민				
사업목적		치매상담, 조기검진, 등록관리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지연 및 사회적 비용 경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치매관리법			제3조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178,573	206,135	206,135			0	0	
국비	142,858	164,909	164,909			0	22,051	기금
도비	5,357	6,184	6,184			0	827	
시비	30,358	35,042	35,042			0	4,684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0	
북부권 치매관리통합 체계 강화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치매쉼터 송영서비스 운영 인건비 - 경정(22,500,000원*1명)-기정(26,516,000원*1명) · 치매환자 쉼터 운영 인건비 - 경정(22,500,000원*1명)-기정(26,516,000원*1명) · 치매조기검진사업 인건비 - 경정(18,126,500원*4명)-기정(19,382,500원*4명)	= -4,016 = -4,016 = -5,024	-13,056
	201-01 사무관리비	· 치매관리사업 홍보물품 제작 - 경정(2,000원*1종*2,500개)-기정(2,000원*1종*500개) · 치매관리사업 안내 리플릿 제작 - 경정(850원*1종*3,000개)-기정(750원*1종*1,000개) · 신경심리검사(CERAD-K)앱 구입 - 경정(6,500원*350명)-기정(6,500원*200명) · 인지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 경정(20,000원*101회)-기정(20,000원*91회) · 치매안심마을 운영: 경정(7,973,000원)-기정(5,084,000원) · 치매관리사업 운영 현수막 제작: 50,000원*8개 · 치매조기검진 안내 리플릿 제작: 800원*1종*1,500개	= 4,000 = 1,800 = 975 = 200 = 2,889 = 400 = 1,200	11,464
	301-14 기타보상금	· 협력의사 진료수당: 경정(343,000원*44회)-기정(343,000원*40회) · 치매예방프로그램 강사비: 경정(110,000원*20회)-기정(110,000원*18회)	= 1,372 = 220	1,592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8233(2026.5.20.)호 관련
 - 경기도 시·군·구 인건비 및 사업비 조정 수요조사 결과 반영으로 예산 조정 승인
 - ※ 필수사업 운영 어려움과 사업중단 위기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사업비로 조정 허용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액 130,562천 원의 10%(13,056천원)를 사무관리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함

□ 예산증감 사유

- 예산증감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승인
일자	2025.11.	-	-	-	-	-	-	-	-	-	2025.9.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02.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홍보
 - 2026. 02. ~ 03. :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 2026. 01. ~ 12. : 북부권 치매관리사업 추진
 - 2026. 12. : 사업 평가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인지선별검사: 2,061명 / 치매환자 등록 관리: 1,199명 / 진단·감별검사: 174명·84명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455명 /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279명 · 치매노인 실종예방: 배회인식표 발급 31건, 지문등록 56명, 배회감지기 10건 · 인지강화 및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경증 치매(98회/661명), 고위험군(41회/403명), 정상군(28회/240명) · 치매안심마을 운영: 4개소
2025	· 인지선별검사: 2,328명 / 치매환자 등록 관리: 1,272명 / 진단·감별검사: 182명·106명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539명 /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289명 · 치매노인 실종예방: 배회인식표 발급 43건, 지문등록 65명, 배회감지기 10건 · 인지강화 및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경증 치매(90회/761명), 고위험군(24회/230명), 정상군(18회/254명) · 치매안심마을 운영: 4개소
2026	· 인지선별검사: 1,539명 / 치매환자 등록 관리: 1,307명 / 진단·감별검사: 131명·35명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602명 /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230명 · 치매노인 실종예방: 배회인식표 발급 34건, 지문등록 86명, 배회감지기 4건 · 인지강화 및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경증 치매(52회/455명), 고위험군(18회/178명), 정상군(10회/68명) · 치매안심마을 운영: 4개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240,000	235,256	-	4,744	
2025	178,573	167,053	-	11,520	
2026	206,135	87,261	-	118,874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북부보건센터	치매관리팀장 연은영	담당자	간호8급 이보은	전화	4212
-----	--------	------------	-----	----------	----	------